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66
----------	-------

제출년월일 : 2010. 10.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등 명칭 변경과 자전거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불의 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 등을 명시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주민자전거”를 “공공자전거”로 명칭을 변경(안 제2조)
- 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 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년 4월22일을 자전거의 날로 규정(안 제14조)
- 라.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
- 마.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일부표현 정비

구 분	기존조례	개정조례
제 명, 안 제1조	자전거이용활성화 ⇒	자전거이용 활성화
안 제3조,안 제4조 안 제5조	각호 ⇒	각 호
안 제4조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 제5조	그밖에 ⇒	그 밖에
안 제5조	규정에 의한 ⇒	따른
안 제7조	주의의무 ⇒	주의 의무
안 제10조 안 제12조	규정에 따라 ⇒	따라
안 제15조	권유토록하고 ⇒	권유토록 하고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2009.12.29 일부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0. 8. 12. ~ 9. 1. (제출된 의견 없음)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3)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주민자전거”를 “공공자전거”로, “마포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마포구 소유의 자전거”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 중 “마포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하고, “매 5년마다”를 “5년마다”로 하며,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설치·운영 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주의의무”를 “주의 의무”로 한다.

제9조 중 “주민자전거”를 “공공자전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2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일이상”을 “10일 이상”으로 하며,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활성화 될”을 “활성화될”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자전거 주차장”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자전거이용시”를 “자전거이용 시”로 하고, “권유토록하고”를 “권유토록 하고”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자전거 보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 의거 주민의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u>」 및 「<u>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u>」</p>
<p>제2조(정의) (생략) 1.~3. (생략) 4. “<u>주민자전거</u>”라 함은 <u>마포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마포구 소유의 자전거</u>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u>공공자전거</u>”..... <u>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u>.....</p>
<p>제3조(기본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u>각호</u>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3. (생략)</p>	<p>제3조(기본책무) <u>각 호</u>..... 1.~3. (현행과 같음)</p>
<p>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u>마포구에 거주하는 주민</u>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u>각호</u>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3. (생략)</p>	<p>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u>서울특별시 마포구에</u> <u>각 호</u>..... 1.~3.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u>자전거이용 활성화</u>를 위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매 5년마다</u>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u>수립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기본계획에는 다음 <u>각호의</u>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6. (생략)</p> <p>7. <u>그밖에</u>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p> <p>③ (생략)</p> <p>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p> <p>⑤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 부서를 <u>설치·운영 할 수 있다.</u></p>	<p>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u>자전거이용 활성화</u>..... 5년마다 <u>수립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른</u> <u>각 호</u>.....</p> <p>1.~6. (현행과 같음)</p> <p>7. <u>그 밖에</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1항에 따른</u></p> <p>⑤ <u>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u>주의의무</u>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u>주의 의무</u>.....</p> <p>② ~ ③ (생략)</p>

현행	개정안
<p>제9조(주민자전거의 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u>주민자전거</u>를 운영할 수 있다.</p>	<p>제9조(공공자전거의 운영) <u>공공자전거</u>.....</p>
<p>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u>법 제22조의 규정</u>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u>10일 이상</u> 동일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u>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u>에 따라 처분 할 수 있다.</p>	<p>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등) ① <u>법 제22조에 따라</u> ② <u>10일 이상</u> <u>같은 법 시행령 제11조</u>에 따라</p>
<p>제11조(자전거정비소·대여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이 <u>활성화</u> 될 수 있도록 자전거정비소 및 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생략)</p>	<p>제11조(자전거정비소·대여소 설치·운영) ① <u>활성화</u>될 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생략) ② <u>제1항의 규정</u>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u>자전거 주차장</u>, 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2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라</u> <u>자전거주차장</u></p>

현행	개정안
<p>③ (생략)</p> <p>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u>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u></p> <p>제15조(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①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u>자전거이용시 안전모 착용과 자전거 후미등 부착을 권유토록하고</u> 그 밖에 안전성 확보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신설></p> <p>제16조(시행규칙)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매년 4월 22일을 <u>자전거의 날로 한다.</u></p> <p>제15조(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① <u>자전거이용 시</u> <u>권유토록 하고</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자전거 보험) 구청장은 <u>자전거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u></p> <p>1. <u>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u></p> <p>2. <u>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u></p> <p>제17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